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용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235 발의연월일: 2020. 11. 12.

발 의 자:이용우·고영인·강준현

홍정민 • 이용빈 • 민병덕

진성준 · 서영석 · 김주영

송영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(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)으로 변경하였는데,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(안 제48조제1항, 제55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8조제1항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 제55조제2항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제48조(사업계획·예산 및 결산) | 제48조(사업계획·예산 및 결산) |
|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경과 | ① |
|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의 결 | |
| 산보고서(사업보고서, <u>대차대조</u> | <u>재무상태</u> |
| 표, 손익보고서와 잉여금처리안 | <u> </u> |
| 및 손실금처리안을 포함한다) | |
| 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| |
|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 | |
| 인을 받아야 한다. | |
| ②・③ (생 략) | ②・③ (현행과 같음) |
| 제55조(청산인) ① (생 략) | 제55조(청산인) ① (현행과 같음) |
|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 | 2 |
| 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 | |
| 목록과 <u>대차대조표</u> 를 작성하여 | <u>재무상태표</u> |
|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 | |
| 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| |
| ③・④ (생 략) | ③・④ (현행과 같음) |